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동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과

(2010. 9.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동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신정동, 하중동)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역표 6을 신설하여 서강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신정동153번지, 153 - 1, 153 - 2의 3필지 11,838.8m²를 하중동에 편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법정동을 하중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현재 서강동을 행정동으로 하는 하중동 101번지 외 2필지 및 신정동 153번지 외 2필지 일대에서 2010년 2. 26일 자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인 하중동과 신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강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하중동 101번지, 신정동 153번지 일대로 사업시행면적은 32,132.m²이고 아파트는 7개동에 488세대가 되겠으며 해당 주민들의 총회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